

우즈베키스탄, 소비재 수입에 대해 30% 특별세 부과 조치 등

□ 「소비재의 불법 통관·유통 방지조치」를 통해 특별세 부과 조치

○ 우즈베크 정부는 2002. 7.19.자 정부령 제257호에 근거한 동 조치를 통해, 기업의 식품 이외 소비재 수입시 상품가격(운송보험료를 포함한 송장가격)의 30%에 해당하는 특별세를 달러화로 납부토록 함

→ 향후 1개월 이내에 “해당 소비재품목 리스트”를 작성하여 시행에 들어가게 됨

- 또한 동 정부령 제 2조에 따라, ① 8. 1.부터 상품현물거래를 통한 소비재 수입(즉 원자재 수출대금을 이용한 소비재 수입, 즉 "바터무역")은 금지되며, ② 수입 소비재의 소매점 및 재래시장 판매시 정당한 수입경로를 입증하기 위해 통관서류를 비치토록 함

- 한편 세관 및 관련 부처 공동으로 소비재 수입통관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, 탈법 통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강화토록 함

○ “소비재 리스트” 해당 품목 수입시 관세, 부가가치세 외에 특별세까지 세 부담이 높아짐으로써 이들 소비재의 수입은 크게 어려워지는 효과가 기대되나, 한편으로는 물품 공급 부족 사태와 이에 따른 소매물가 상승도 우려되고 있음

→ 동 정부령은 「소비재 반입절차 확립에 관한」 대통령령 제UP-3105호 (2002. 7. 11.자) 의 후속 시행령으로, 적용기업범위를 모든 법인으로 확대할 경우, 최근 정부의 보따리商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및 경화 납부 조치와 더불어 수입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
- *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 6. 1.부터 개인(보따리商)의 물품 반입시 식품류는 50%,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90%의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8. 1.부터는 이를 달러화로 납부토록 조치
- * 이와 아울러, 정부령 「개인에 의한 물품 반입절차 단순화에 관한 추가 조치」 제 3조를 통해 운송업체의 보따리商의 화물통관 대행행위를 금지

□ 관세 면제 대상품목 지정

- 「소비재 반입절차 확립에 관한」 대통령령 제UP-3105호에 따라 소비재 수입시 관세 등 내국세 면제대상품목을 지정
- 이에 따라 8. 1.부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에 대한 수입관련 조세감면혜택이 철폐됨

세금종류별 수입시 면세품목

면제 세금	품 목
관 세	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품목
	우즈베크 정부가 체결 또는 정부보증 하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수입되는 품목
	전시회, 광고 등을 위해 반입되는 물품
	외교관 및 면세통관자격을 갖고 있는 주재원 개인용으로 반입되는 물품
부가가치세	의약품과 의료용품
관세 및 부가가치세	인도주의적 원조로 반입되는 물품
관세,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	컴퓨터 장비 및 소프트웨어

□ 소비재 및 서비스 수입을 위한 달러구입시 적용환율을 종전 공식환율에서 자유시장환율로 변경

-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「장외외환시장 발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」 정부령 제247호(2002. 7. 12)를 통해 7. 16.부터 소비재 및 서비스 수입을 위한 달러구입시 적용환율을 상업은행의 자유시장환율(환전소환율)을 적용토록 함

- 자유시장환율은 공식환율의 1.4배 수준임

- 원자재 수입시에는 종전처럼 공식환율로 적용

-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그 동안 환전쿼터제를 운영, 외환배정 우선순위에 따라 기업에 대한 환전쿼터를 배정하고, 동 한도내에서는 물가상승 억제 차원에서 공식환율로 경화를 구입할 수 있게 한 바, 이는 정부의 환차손을 유발, 재정압박요인이 됨

→ 금년 들어 외화환전쿼터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한편, 그 적용환율도 시장환율로 현실화함으로써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, 환율단일화를 위해서도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음

- 한편, 7. 25. 현재 공식환율은 미달러당 759.13숨, 자유시장환율(환전소환율)은 1,080숨(고객팔때)~1,200숨(고객살때), 암시장 환율은 1,250~1,260숨이며, 공식환율은 매주 0.5% 정도 평가절하 추세임

우즈베키스탄 주재원 제공
선임조사역 오 은상(☎02-3779-6644)
E-mail : oes@koreaexim.go.kr